사하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오피스텔 분양광고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분양 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양 광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사하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사하삼정그린코아더시티.com)과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 본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사하삼정그린코아더시티.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방역 운영방안을 준수하여야만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하오니 내방 시 아래 준수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열 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 확인 시 37.5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불시에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1.12.09) 기준입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10%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1.12.07,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부산광역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1.12.07, 광고일과 다름)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미만 오피스텔로서 계약금 10% 납입 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12월 15일(수)	12월 21일(화) 16:00시 이후	12월 22일(수) ~ 12월 23일(목)(10:00~16:00)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사하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481)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과-58790호(2021.12.07.)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과 신축허가 19호(2021.05.03.)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10-27번지 일원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상대보호구역, 가로구역최고높이제한구역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2,508.4000㎡
- 건축물 연면적 : 30,730.0788㎡(오피스텔 : 4,890.1012㎡)
- 공급규모 : 지하 3층 ~ 지상 26층, 3개동 중 오피스텔 1개동, 총 72실

■ 내진설계 등급 : 본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KDS2019)에 따라 내진능력 (진도Ⅶ 0.239g)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5년 01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타 입	공급호실(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27A	24	27.9842	20.2585	48.2427	19.0166	67.2593	3.8270
28A	48	28.1124	21.0314	49.1438	19.1037	68.2475	3.8446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부산광역시 사하구)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약과열지구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부산광역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타 입	공급호실(수)	공급 유형별		비고
		거주자 우선	일반	
27A	24	2	22	※ 주민등록등본표 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우선 당첨자 선정 ※ 거주자 우선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 검토 후, 분양 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됩니다.
28A	48	4	4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타 입	동/라인	공급호실	층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계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시
									2022-07-15	2023-01-15	2023-07-15	2024-01-15	2024-04-15	2024-08-15	
27A	103동 2호라인	4	3~6층	70,191,000	55,945,000	5,594,000	131,730,000	13,173,000	13,173,000	13,173,000	13,173,000	13,173,000	13,173,000	13,173,000	39,519,000
		3	7~9층	70,921,000	56,527,000	5,652,000	133,100,000	13,310,000	13,310,000	13,310,000	13,310,000	13,310,000	13,310,000	13,310,000	39,930,000
		6	10~15층	71,651,000	57,109,000	5,710,000	134,470,000	13,447,000	13,447,000	13,447,000	13,447,000	13,447,000	13,447,000	13,447,000	40,341,000
		5	16~20층	72,380,000	57,691,000	5,769,000	135,840,000	13,584,000	13,584,000	13,584,000	13,584,000	13,584,000	13,584,000	13,584,000	40,752,000
		6	21층 이상	73,116,000	58,277,000	5,827,000	137,220,000	13,722,000	13,722,000	13,722,000	13,722,000	13,722,000	13,722,000	13,722,000	41,166,000
28A	103동 1,3호라인	8	3~6층	72,674,000	57,924,000	5,792,000	136,390,000	13,639,000	13,639,000	13,639,000	13,639,000	13,639,000	13,639,000	13,639,000	40,917,000
		6	7~9층	73,431,000	58,527,000	5,852,000	137,810,000	13,781,000	13,781,000	13,781,000	13,781,000	13,781,000	13,781,000	13,781,000	41,343,000
		12	10~15층	74,187,000	59,130,000	5,913,000	139,230,000	13,923,000	13,923,000	13,923,000	13,923,000	13,923,000	13,923,000	13,923,000	41,769,000
		10	16~20층	74,943,000	59,734,000	5,973,000	140,650,000	14,065,000	14,065,000	14,065,000	14,065,000	14,065,000	14,065,000	14,065,000	42,195,000
		12	21층 이상	75,700,000	60,337,000	6,033,000	142,070,000	14,207,000	14,207,000	14,207,000	14,207,000	14,207,000	14,207,000	14,207,000	42,621,000

■ 공통 유의사항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제3호 기준“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마감선, 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계약면적에는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및 발전기실, 관리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및 발전기실, 관리실에 대한 금액이 분양(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층, 향, 구조 등을 감안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각 실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 취득세(기존세법상 등록세포함)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 납부합니다.
- 상기 분양금액의 회차별, 중도금 납부액 및 납부 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달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 본 오피스텔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 주체와 대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금융시장의 변화,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법인계약, 다호실 계약 등) 등에 따라 대출조건과 취급 등이 제한(불가)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이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균등 배분하였으며, 각 호실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와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I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청약과열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하여 분양호실 10%를 부산광역시 거주자에 우선 선정합니다.

(부산광역시 거주자는 청약 신청 시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청약해야 우선분양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 단,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부산광역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모집광고일(2021.12.09.)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되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12월 15일(수)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12월 21일(화) 16:00시 이후	12월 22일(수) ~ 12월 23일(목) (10:00~16: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타입)별 무작위 결정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사하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481)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부산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군/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용
전 타입	3,000,000원 (금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부산은행 전 지점)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4">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견본주택 및 은행 창구에 비치) / • 본인 도장(본인의 경우 서명 가능)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신청금 /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 colspan="2">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견본주택 및 은행창구에 비치) / • 청약신청금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 명의)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td></tr>
</table>

※ 창구접수는 대행은행인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1.12.0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1년 12월 21일(화) 16:00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
동·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군 내에서 타입·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 납부완료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비 후 계약 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종료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관련법령에 의거 자격제한 없이 임의로 분양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부정당첨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함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III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1년 12월 22일(수) ~ 12월 23일(목)	10:00 ~ 16:00	**사하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낙동대로 481)**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오피스텔 분양대금	부산은행	101-2077-8259-02	삼정건설 주식회사 고광현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1001호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청약 신청 접수(영수)증 / 인터넷 청약 시 생략 가능 •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 본인사실서명확인서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1통 [“상세”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법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및 법인 인감도장 /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인장, 신분증 지참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	•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1.12.0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신청 시와 동일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자는 본 분양광고의 제반 사항을 숙지하셔야 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 분양합니다.

•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시설 현황, 도로, 소음, 일조권,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계약 호실에 대해 호수 및 면적, 공급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등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오피스텔은 중도금 무이자가 적용되며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 정책에 따른 대출 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가 발생 및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대출 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계약 체결 이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은행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 단, 정부의 대출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출 금액 : 공급자가 지정하며 공지한 금융기관에서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대출 조건 :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자격 및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LTV, DTI 적용으로 개인에 따라 차등)
- 분양사무소는 대출 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 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됨으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 제한 등)변경, 국제금융 위기상황 발생, 대출 금융기관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가 발생 및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 법인인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분양대금을 계약자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시 계약자의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은 금융기관별 인당 건수가 제한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니, 사전에 지정한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 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 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 조건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Ⅳ 기타 계약자안내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미만 오피스텔로 계약금 10% 납입 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 제2호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에 따른 승인 신청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금융기관이 발생한 전매 당사자 간의 증거서류(대출승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당해 오피스텔의 전매 가능 시기는 계약금 10% 납부 및 전매일 당일까지 미납된 채무가 없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가능하나 당사에 대한 채무이행 및 당사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25년 01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이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지정 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전쟁, 천재지변, 내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제10의2에 의거 사용승인 전에 계약자가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행하며 그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V 기타 유의사항

■ 일반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람)

구 분	내 용
공통 사항	• 본 분양 광고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 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광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 • 본 건축물은 오피스텔, 공동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이 복합화된 건축물입니다. • 계약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평형 환산법 = 형별 면적(㎡)×0.3025 또는 형별 면적(㎡)÷3.3058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며, 전체 연면적과 호실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둘째 자리로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주거 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등)과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14.12.0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방식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선)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호실 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등의 계획은 현재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합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변경허가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 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만 계약금분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실입주일이 만료일보다 앞서는 경우 실입주일)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전기료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 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건축물의 공급가격은 각 호실의 타입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타입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등 주변 시설현황, 조망권, 주변 개발여건, 유해시설현황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발생 시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 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내(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지하 쓰레기 관련 시설, 단지 내 도로 등) 및 단지 주변 현황(인접 아파트 단지, 인접 주택 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 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단지 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 시설(도시계획시설 포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시 기계약자의 실거래필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사오니, 분양권 전매 시 관련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매 확인용 제출서류에 대해 복사/재발행은 불가합니다. •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학교 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 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릅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변 여건상 당 사업지 내에 인접 건물용 전신주 및 맨홀 등이 경계부 측으로 일부 존치될 수 있으며 시설에 대한 관리목적에 한해 해당 시설 관리자가 단지 내 출입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단지 측면에 관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로의 경계와 지적측량경계가 상이하여 경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부상 지적측량경계 면적으로 합니다. • 시공 시 인접 건물과 대지경계에 침범이 있을 경우 소유권 이전 없이 대지의 상호 교환사용에 합의하였으며, 합의 내용은 준공 시 수분양자에게 승계됨을 인지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 경계에 설치되는 경계울타리(담장 등)는 인접 건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본 사업지 경계 안쪽으로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감재	•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변경허가 포함)**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은 분양자료(CG, 모형 등)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의 마감자재는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욕실 색상 메지는 시간 경과, 현장여건에 따라 색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천연석으로 시공 되어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결 무늬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 홍보물	• 분양 광고 및 카탈로그, 분양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관련 법규(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발주처에 위임합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탈로그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본 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견본주택 내 전시 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공급 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당사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내용은 보도자료 기준이며, 인허가청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 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그래픽, 사인, 기단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하여 일정 기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는 오피스텔 28㎡A 타입이 설치되어있으며, 마감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되므로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 위치 등)은 건축허가 최종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 전시세대 천장에 일부 전시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세대 조명 설치 제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리플렛 및 카달로그 등 분양 홍보용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사업지내 축적과 단지 주변 축적을 달리하여 표현하였으며, 일부 현황을 간략화 또는 축소하였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도로, 철도, 횡단보도, 보도, 점자 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에 설치된 단지 내, 외부의 옹벽 및 시설물 등은 일부 도면과 현황 레벨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조정하여 제작하였으며, 본 공사시 실제 현황에 맞추어 실시설계 및 최종 시공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 되어있는 등기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일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고 계약한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 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 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식재, 시설물 등),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 차량 동선 등)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호실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입주 후,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택지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공급시와 명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으로 역사 등이 위치함에 따라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조망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양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부산교통공사, 관할관청 등으로 민원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에 소방차 정차공간을 그림자 조명으로 표시하며 준공 후 철거할 수 없습니다. • **낙동대로측** 대지 내 보행용 인도의 유지관리 주체로서 공동 관리 해야합니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단지내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 장식품은 미술 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재료, 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시 별도의 정산은 없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일반분양 계약자의 동의 없이 발주처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경비실, 주차 게이트, 도로 선형변경 및 기타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및 지정은 굴토 후 지내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 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은 건물 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 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휀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관청의 인허가 조건[**건축(변경)허가**, 건축 심의, 전문심의 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 차량 동선 등 포함), 조경수와 조경 시설(주민 운동 시설, 휴게공간, 차음 식재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경계 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소방 내진 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공사 공법은 토질 및 지하 수위 등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공동주택부지 내에 지상식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부지를 무상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측벽에 낙뢰 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뢰 피뢰침을 시공될 수 있습니다.
단지	공통 사항	• 본 건축물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공사 중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옥외계단 및 캐노피 등), 창틀 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디자인], 색채를 포함한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데크 엘리베이터, 데크 계단 디자인, 상부 지붕 프레임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입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전유리 난간대가 설치된 발코니 창호가 설치되어 이삿짐 사다리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지 안의 공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로 일부 구간 인근 주변 주민들의 보행이 가능하게 설계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층별 또는 호(실)별로 일조, 통풍, 소음, 조망, 콘크리트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위치와 형태 및 재질, 기둥 또는 보 등의 차이가 있으며, 인·허가 과정 및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관 구성상 일부 호(실)의 창호가 확대, 축소, 개폐 방식 및 방향 등의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지 안의 공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로 일부 구간 인근 주변 주민들의 보행이 가능하게 설계적용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배경 등은 현재 상황 및 설치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 아파트 단지의 부지가 아니며, 지자체 심의 및 인허가 과정 중 도로 선형, 식재 계획, 조경시설물의 위치 및 종류, 포장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모형, CG 등에 표현된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의 관련 민원을 당사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와 단지 내 레벨 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북측의 8M 도로에서 차량 진출이 이루어집니다.** • 단지 내 비상 시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비상 차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 소음, 매연, 자동차 전조등에 의해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배치계획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 바랍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차량 진출구 우측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되거나,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에는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됩니다.(3~11층 28A)**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 됩니다. • 저층부 입면 석재마감/석재뿜칠마감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부위에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 장애등, 태양광발전설비, 위성안테나, 피뢰침, 이동 통신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등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 실외기, 탈취기 및 급배기 환기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호실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구조물(설비 환기용 환기구, 제연설비 환기구 등)이 주동에 접하거나 전면·측면·배면 인근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본 공사시 효율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매연,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구조물(설비 환기용 급·배기구, 천창, 주차장 환기구),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하부 지하층 및 지하층 주변에 휀룸 또는 제연 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 호실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설계도면에 반영된 공용설비로 인한 제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단지 내 비상 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 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등의 디자인 및 장식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동 세대 발코니에 장식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D/A)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색채 및 창호 형태는 부산광역시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예정이며, 견본주택 내 모형도, CG에 반영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도로계획은 향후 인허가 진행 사항 및 인근 단지 개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옥탑층에 소방용 수조가 설치됩니다.** • 단지 내 공용부 마감 기준은 시공사의 특화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배치	• 단지 내 동간 거리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각 동 인접 동과의 시각적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 호실에 의해 각 호실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호실별 동간 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세대간 생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 및 건물 높이, 창호 형태에 따른 문제 등으로 사다리차(크레인)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 호실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호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식주차에 근접한 호실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 호실은 냄새, 해충 등에 의한 생활 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내 단지모형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동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커뮤니티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계단실 내부의 바닥 마감은 지정 타일, 벽마감은 지정도장으로 시공됩니다. • 주동 저층부 및 부대시설 외벽은 석재와 뿜칠, 벽돌, 수성페인트가 혼합 시공됩니다.
	부대 시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휀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외부계단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크기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저층 세대에서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입·단면, 마감재 및 집기, 창호 재질 및 색상, 창호 사양, 유리 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 배수 시스템(지하수 차단 및 배출장치), 조경(식재, 포장, 어린이 놀이터 등)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 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 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 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 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의 냉방 관련 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로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등)의 운영·보수·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실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 단지 내 주차장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관련 규약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입구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내부 색채디자인은 시공사 특화 디자인 매뉴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상부 시설이 단열이 필요한 부분)은 열 관류율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법정 주차대수 산정 시 아파트는 전용면적대비 세대당 1대로 배정되나,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대비 세대당 0.5대로 배정됩니다. 따라서 주차공간 부족 등의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택배차량의 출입이 불가합니다. 단지 내 주차장 차로의 실 유효높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서 2.7m이상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업지 지하주차장 차로 실 유효높이는 동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제2호 가목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 주차장의 기둥 및 벽, 시설물 등의 간섭으로 차량 도어 개폐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경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 시설의 위치는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단지 옥외공간의 조화 등에 따라 선형이나 포장과 시설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세대	공통 사항	• 일부 호실은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인 호실 지정 시 동일타입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쇼파 설치 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난간 턱 높이 조정, 난간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의 경우 최초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시공예정이며, 제품의 단종 시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커튼 박스 길이는 천장 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PD, AD 등 샤프트 벽 내부 별도 마감(미장 포함) 없습니다. • 복도 및 호실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세탁물 건조기, 의류 보관함 등)이 설치공간의 폭, 높이, 길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 불가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도면에서 이를 사전에 확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현관 신발 수납장의 내부 구성은 호실 위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설치하는 침실 및 욕실문 고정부 모서리 면에는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되며, 재질, 색상 및 상태는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실의 아트월 설치 및 주방,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수납사용이 어려우며, 하부공간이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 급수 급탕분배기를 설치 예정입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별 현관은 출 입시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호실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 가구, 신발장,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 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아트월, 현관 바닥, 욕실, 다용도실 바닥 등의 타일 나누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에 시공되는 주방가구 상판 및 벽체의 스톤 재질은 원재료의 특성상 이음 부위의 마감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하자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 코일 및 강마루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가 미시공됩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 됩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됩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호실 현관 전면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홀 대기인에 의한 시각적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3, 4층 및 최상층에만 적용합니다.** • 호실 내 분전반 및 단자함은 노출된 벽체에 설치되며,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호실 내 통신세대단자함, 전기세대 분전함,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화장실 천장 내부에 급수 급탕 분배기가 설치되며, 평형 및 타입에 따라 위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주방가구, 일반 가구 규격 및 배치 불만, 전자제품 사용 불편 등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 평면 및 가구류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 배치, 평면배치 등을 입주자 개인의 기호에 맞게 변경할 수 없고, 내부 시설물의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호실 내부 및 세대 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실외 기실/ 대피 공간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실외기 루버의 프레임과 루버 크기, 두께, 형태, 색상, 재질, 하드웨어, 설치 위치, 손잡이 디자인, 사양,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배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창호	• 본 공사 시 사용성을 고려하여 가구 및 창호의 시공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 유리 및 손잡이의 형태, 열림 방향, 색상 제조사 등은 실시공시 PNS, KCC, LG하우시스, 현대L&C 제품 중 선택하여 변경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문/창의 위치, 크기 및 형태, 제조사, 문열림 방향, 프레임, 손잡이, 힌지의 형태 등 은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 설비	• 발전기 연도 설치로 발전기 운전 시에 따른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욕실 천장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 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호실 내의 배수구 등 설비 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타입에 따라 다용도실 상부에 설비배관이 노출 설치되어 천장 높이가 변경되거나 타 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며, 타입에 따라 단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비 계획 등으로 인한 지상2층 필로티 천장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패드 및 주방TV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 통신 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 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101동, 102동, 옥상층 등 지상 일부 구간, 지하층 등**

■ 감리자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사하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건축 감리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540,000,000	
	전기 / 통신 / 소방 감리	(주)진일기술단	361,9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내용

(단위: 원)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2312021-104-0000800 호	₩ 6,954,948,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 ~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해당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양광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전까지 잔금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 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

구분	시행사	시공사
상호	삼정건설 주식회사	삼정건설 주식회사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222-13, 4층(온천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222-13, 4층(온천동)**

법인등록번호	180111-0797499	180111-0797499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사하삼정그린코아더시티.com
■ **견본주택 위치** :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481
■ **분양문의** : 051) 201-567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